

대한변리사회 대의원회

제7대 제4차 정기회의 회의록

1. 일 시 : 2023. 2. 15(수), 17:00 ~ 20:00
2. 장 소 : 본회 지하 1층 연수실
3. 참석인원 : 대의원 70명 중 65명 참석(위임장 18명 포함)

- 참석자 명단

강주영 김두규 김성우 김성현 김영조 김철진 김효준 남완용 노세호 박정훈
 박중민 신명진 신정호 심수진 안지웅 양창훈 엄정한 원유겸 윤경애 윤희상
 이다희 이대현 이상현 이영수 이철주 장성규 장영진 정상섭 정성준 조세윤
 채민구 최승진 최준혁 홍성우 (이상 선출직 34명)

김경수 서영호 차현태 류승민 전필성 김탁곤 주승진 정경민 정지혜 강세훈
 장은영 김병주 박상환 (이상 당연직 13명)

- 위임장 제출명단

강정화 김영상 박성리 박수영 백승엽 신무연 신진현 오창석 윤원식 이광재
 이태영 장동규 정민영 조재현 조호균 홍주의 안재훈 최현정 (이상 18명)

4. 주요 논의 사항

성원 및 개회	
성원 보고	○ 대의원 총 70명 중 1/3 이상인 34명과 위임장 제출 18명을 포함하여 총 52명이 출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함 *회의 성립 후 13명이 추가 참석함
대의원회 주요 활동 경과 보고	
대의원회 주요 활동 경과 보고	○ 김철진 부의장이 보고를 함 ○ 의장단 간담회, 의장단 및 소위원장 간담회 2회, 예산및결산소위원회 3회,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3회 등을 개최함 ○ 인천 및 대구지역 회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사항 설명 및 회무참여를 독려하였으며 지방회원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집행부에 전달함
보고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회무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장원 회장이 주요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소송대리권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의원회의 참여와 협조를 요청함 ○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된 자료로 대체함 												
<p style="text-align: center;">안 건 심 의</p>	<p style="text-align: center;">논 의 결 과</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결산 승인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필성 재무이사가 제안설명을 함 ○ 윤경애 예산및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함 ○ 총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수 입</th> <th style="width: 33%;">지 출</th> <th style="width: 33%;">순손익</th> </tr> </thead> <tbody> <tr> <td>3,736,949,140</td> <td>3,831,161,595</td> <td>△ 94,212,455</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일반회계></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수 입</th> <th style="width: 33%;">지 출</th> <th style="width: 33%;">순손익</th> </tr> </thead> <tbody> <tr> <td>482,867,963</td> <td>750,422,569</td> <td>△ 297,554,606</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회관회계></p>	수 입	지 출	순손익	3,736,949,140	3,831,161,595	△ 94,212,455	수 입	지 출	순손익	482,867,963	750,422,569	△ 297,554,606
수 입	지 출	순손익											
3,736,949,140	3,831,161,595	△ 94,212,455											
수 입	지 출	순손익											
482,867,963	750,422,569	△ 297,554,606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잉여금처분(안) 승인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필성 재무이사가 제안설명을 함 ○ 윤경애 예산및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함 ○ 총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 · 일반회계 : 0원 · 회관회계 : 0원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안) 승인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필성 재무이사가 제안설명을 함 ○ 윤경애 예산및결산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함 - 연수수입 증가에 따라 회원들에게 교육비를 무료로 회원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 특허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총 44명 중 찬성 44명으로 원안과 같이 승인함 ○ 2022년 사업예산(안)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33%;">구 분</th> <th style="width: 33%;">수 입 예 산</th> <th style="width: 33%;">지 출 예 산</th> </tr> </thead> <tbody> <tr> <td>일 반 회 계</td> <td>4,306,142</td> <td>4,306,142</td> </tr> <tr> <td>회관특별회계</td> <td>661,960</td> <td>661,960</td> </tr> </tbody> </table>	구 분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일 반 회 계	4,306,142	4,306,142	회관특별회계	661,960	661,960			
구 분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일 반 회 계	4,306,142	4,306,142											
회관특별회계	661,960	661,960											

<p>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 제21조에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합동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이 맞다는 의견과 함께 합동사무소라는 명칭은 변리사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라는 명칭이 안들어가 있어서 기회가 된다면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특허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해외에서 상표 업무는 하지 않는냐는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어 향후 특허법인 명칭을 변리사 업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21조(사무소명칭) 제2항은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 총 45명 중 찬성 37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1 참조] 8Page
<p>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제28조, 제2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 제29조(징계처분의 종류)의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과 제명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의처분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징계처분에 주의를 신설하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음 ○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징계처분 결과를 잘 알려야 하거나 징계처분에 등록취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총 41명 중 찬성 28명, 반대 3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2 참조] 23Page
<p>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제8조, 제14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 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 제3항의 경우 개정 전 휴업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칙에 “제8조 제3항 개정 전 동 항에 따라 휴업한 회원이 제18조에서 규정된 회비의 체납분이 있는 경우 개정 전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개업 신고와 함께 회비의 체납분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38명 중 찬성 26명, 반대 3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3 참조] 24Page
<p>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 결선투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총 37명 중 찬성 26명, 반대 11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4 참조] 26Page
<p>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제32조의2 제6항, 제33조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 2인 중 1인은 전임 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전임 임원 모두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이 있었음 ○ 제33조의6(감사선출위원회) 제1항을 “제33조의2 제6항에 따라 총회가 감사의 선임을 감사선출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감사 선임을 위하여 감사선출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 제33조의6(감사선출위원회) 제3항의 “전임 임원 중에서”를 “이 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 총 37명 중 찬성 34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5 참조] 28Page
<p>회칙 개정(안) 승인의 건 (제17조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칙은 간단명료하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하는 것으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제17조의6(광고)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 총 37명 중 찬성 28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6 참조] 29Page
<p>회비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조 제1항·제2항·제8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p style="text-align: center;">제3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회비 차등부과와 관련하여 사무소에서 자연차 변리사등록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회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자격취득 후 1년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3조 제1항의 시행시기도 2023. 7. 1부터로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었음 ○ 변리사자격 취득자에게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면 본인도 모르고 늦게 등록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제3조(회비의 금액) 제8항을 “이 회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1항 단서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 총 31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p>[붙임 7 참조] 30Page</p>
<p style="text-align: center;">회비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제3조 제7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경수 부회장이 제안설명을 함 ○ 신명진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 상표출원 건수 기준으로 일정 기준 초과건수에 대해서 실적회비를 증액하는 것과 관련하여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사무소까지 패널티를 주는게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특허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의 소속변리사가 여러명인 경우 등 정당한 사무소가 패널티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내국인 상표출원 외에 특허, 디자인 출원에 따른 실적회비 증액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3조(회비의 금액)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⑦제4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내국인의 상표출원건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적회비를 증액하고, 납인된 실적회비 중 100분의 15는 회관특별회계로 계상한다.</p> <p>1. 1,000건을 초과한 건수부터 3,000건까지는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4배</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2. 3,000건을 초과한 건수부터 5,000건까지는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6배</p> <p>3. 5,000건을 초과한 건수부터는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8배</p> </div> <p>○ 총 31명 중 찬성 28명, 반대 1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8 참조]32Page</p>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회칙 개정(안)이 특허청장 인가를 받은 후에 차기 대의 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징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회칙 개정(안)이 특허청장 인가를 받은 후에 차기 대의 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감사선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승인의 건	○ 회칙 개정(안)이 특허청장 인가를 받은 후에 차기 대의 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지식재산 감정사건 처리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시간관계상 차기 대의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p>○ 박상환 공익이사가 제안설명을 함</p> <p>○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p> <p>○ 총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9 참조] 34Page</p>
회지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p>○ 장은영 공보이사가 제안설명을 함</p> <p>○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p> <p>○ 부칙에 경과 규정을 “이 규정은 회칙 제9조의4 개정이 특허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기로 함</p> <p>○ 총 31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10 참조] 35Page</p>
포상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p>○ 류승민 총무이사가 제안설명을 함</p> <p>○ 신명건 법령제도발전소위원회 위원장이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상을 장기적으로 점차 줄여나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음○ 총 30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 [붙임 11 참조] ... 37Page
--	--

회칙 개정(안)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5조의3(전문변리사분회 설치)</p> <p>① 이회는 회원의 회무참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변리사분회를 둔다.</p> <p>② 이회 회원은 <u>하나이상의</u> 전문변리사분회에 가입할 수 있다.</p> <p>③ 전문변리사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p>	<p>제5조의3(전문변리사분회 설치)</p> <p>① 이회는 회원의 회무참여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변리사분회를 둔다.</p> <p>② 이회 회원은 <u>하나 이상의</u> 전문변리사분회에 가입할 수 있다.</p> <p>③ 전문변리사분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회규로 정한다.</p>	띄어쓰기
<p>제5조의4(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p> <p>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회 또는 지부는 총회의 의결을 <u>얻은</u> 후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p>	<p>제5조의4(지회 또는 지부의 설치)</p> <p>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지회 또는 지부는 총회의 의결을 <u>거친</u> 후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p>	자구수정
<p>제6조(회원의 가입)</p> <p>① 법 제11조에 따라 이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개인회원의 경우는 <u>별지 제1호 서식</u>, 제1호의 <u>4서식</u> 및 <u>제1호의 5 서식</u></p> <p>2. 특허법인 회원의 경우는 <u>별지 제1호의 2 서식</u>, 특허법인(유한)회원의 경우는 <u>별지 제1호의 3 서식</u></p> <p>3. 생략</p> <p>② 제1항에 <u>의거</u> 이회에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⑤ 생략</p>	<p>제6조(회원의 가입)</p> <p>① 법 제11조에 따라 이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p> <p>1. 개인회원의 경우는 <u>별지 제1호 서식</u>, 제1호의 <u>4 서식</u> 및 <u>제1호의 5 서식</u></p> <p>2. 특허법인 회원의 경우는 <u>별지 제1호의 2 서식</u>, 특허법인(유한)회원의 경우는 <u>별지 제1호의 3 서식</u></p> <p>3. 좌동</p> <p>② 제1항에 <u>따라</u> 이회에 가입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⑤ 좌동</p>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5 서식 변경 별지 제1호의 2 및 제1호의 3 서식 변경 띄어쓰기
<p>제9조(회원의 자격상실)</p> <p>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u>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u> 회원의 자격상실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p> <p>1.~2. 생략</p> <p>3. <u>제29조 제3호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u></p> <p>4.~6. 생략</p>	<p>제9조(회원의 자격상실)</p> <p>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u>제5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u> 회원의 자격상실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p> <p>1.~2. 좌동</p> <p>3. <u>제29조 제4호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u></p> <p>4.~6. 좌동</p>	자구수정 제29조 개정 따른 자구수정

<p>7. 법 제6조의8 및 제6조의19에 의거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설립의 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6조의9 및 제6조의20에 의거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해산되었을 때</p> <p>② 생략</p>	<p>7. 법 제6조의8 및 제6조의19에 따라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 설립의 인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6조의9 및 제6조의20에 따라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이 해산되었을 때</p> <p>② 좌동</p>	<p>자구수정</p>
<p>제9조의2(회원자격상실자의 이의신청)</p> <p>① 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상실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의2(회원자격상실자의 이의신청)</p> <p>① 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원자격상실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좌동</p>	<p>자구수정</p>
<p>제9조의3(회원자격상실의 효력발생)</p> <p>제9조제1항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때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이유 없음을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제9조의3(회원자격상실의 효력발생)</p> <p>제9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상실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한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이유 없음을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p>	<p>자구수정</p>
<p>제9조의4(회원자격상실의 통보 및 공고)</p> <p>회장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및 특허와상표지에 회원자격상실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제9조의4(회원자격상실의 통보 및 공고)</p> <p>회장은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및 회지에 회원자격상실 공고를 하여야 한다.</p>	<p>명칭변경</p>
<p>제12조(서류의 보정)</p> <p>① 회장은 제6조의 신청내용이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서류의 보정)</p> <p>① 회장은 제6조의 신청내용이 법령 또는 회칙에 위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 좌동</p>	<p>자구수정</p>
<p>제17조(회원의 의무)</p> <p>① 회원은 변리사의 직무를 신의에 좇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 회령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회원은 이 회가 법령, 회령 및 회규에 의거하여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p> <p>③~④ 생략</p> <p>⑤ 회원은 이 회가 특허청 및 법원행정처로부터 실적회비 부과 및 실적증명발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양식에 의거한 개인정보제공</p>	<p>제17조(회원의 의무)</p> <p>① 회원은 변리사의 직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유지하고 법령, 회령 및 회규를 준수하여야 한다.</p> <p>② 회원은 이 회가 법령, 회령 및 회규에 따라서 결정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p> <p>③~④ 좌동</p> <p>⑤ 회원은 이 회가 특허청 및 법원행정처로부터 실적회비 부과 및 실적증명발급을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정의 양식에 다른 개인정보제공</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변리사의 정보공개) ① 이회는 법 제14조 및 영 제17조의4 제3항에 <u>의거</u> 변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생략	제17조의4(변리사의 정보공개) ① 이회는 법 제14조 및 영 제17조의4 제3항에 <u>따라</u> 변리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 ② 좌동	자구수정
제17조의5(회원의 가치평가 업무수행) ① 이회 회원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u>시</u> , 이회가 제정한 IP실사평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회 회원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u>시</u> , 이회의 IP가치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의5(회원의 가치평가 업무수행) ① 이회 회원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u>경우</u> , 이회가 제정한 IP실사평가 가이드라인을 지침으로 할 수 있다. ② 이회 회원은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할 <u>경우</u> , 이회의 IP가치평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18조(회비 등 납부의무) ①~② 생략 ③ <u>제17조 5항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의 실적회비 부과 기준 및 금액은 최종 파악된 연도 수입실적의 120%로 간주하여 산출한다.</u> - ④ <u>제1항제2호</u> 및 제3호의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8조(회비 등 납부의무) ①~② 좌동 ③ <u>제17조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의 실적회비는 직전년도 산출된 실적회비 총액을 직전년도 수입실적이 있는 회원의 수로 나누는 금액으로 한다.</u> ④ <u>제1항 제2호</u> 및 제3호의 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좌동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 실적회비 부과 개선 띄어쓰기
제20조(사무소설치의 제한) <u>회원은 법 제6조의 2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u>	제20조(사무소설치의 제한) <u>회원은 법에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u>	자구수정
제21조(사무소명칭) ① 회원의 사무소 <u>명칭에는 「특허법률사무소」 또는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u> ②회원은 그 사무소 명칭을 정함에 있어 타 변리사의 사무소 명칭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사무소명칭) ① 회원의 사무소 <u>명칭은 「특허법률사무소」, 「합동사무소」, 「특허법인」 또는 「특허법인(유한)」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u> ②좌동	띄어쓰기 통일
제22조(부당행위의 규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한변리사회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일 2. 자기의 경력 또는 본인을 <u>오인케</u>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명함·간판·서류	제22조(부당행위의 규제)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한변리사회와 혼동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하여 단체를 조직하는 일 2. 자기의 경력 또는 본인을 <u>오인하게</u>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을 명함·간판·서	자구수정

등에 기재하여 광고 선전하는 일 3.~5. 생략	류 등에 기재하여 광고 선전하는 일 3.~5. 좌동	
제25조(징계) ①회장은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하거나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 회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징계를 특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생략	제25조(징계) ①좌동 ②회장은 법 제17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징계를 특허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좌동	법 조문 순서 변경 반영
제27조(징계위원회)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제27조(징계위원회) 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 직속으로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 의결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④~⑤ 생략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2조(임원의 범위) ①생략 ②회장은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부회장은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5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부회장 1인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회의 회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임원의 범위) ①좌동 ②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부회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5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부회장 1인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업무정지기간 포함 제14조 제5항 제4호 이동
제33조(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 총회 ·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제33조(회장)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 총회 ·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③ 생략	자구수정
제37조(감사) ①~②생략 ③감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제37조(감사) ①~②좌동 ③감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자문위	자구수정

<p>구성 및 감사보조위원 선임을 회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생략</p>	<p>원회 구성 및 감사보조위원 선임을 회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좌동</p>	
<p>제38조의2(보선 등)</p> <p>① 회장의 궐위 시 그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선 하여야 한다.</p> <p>② 부회장, 상임이사가 궐한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후임자를 보임하여야 한다.</p> <p>③생략</p>	<p>제38조의2(보선 등)</p> <p>① 회장의 궐위 시 그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보궐 선거를 하여야 한다.</p> <p>② 부회장, 상임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보임하 여야 한다.</p> <p>③좌동</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제41조(의결방법)</p> <p>①생략</p> <p>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 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 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생략</p> <p>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 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회 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 규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 장이 된다.</p> <p>⑥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정기총회에서는 직전연도 12월 31일 현재의 회원으로 하고, 임시총회 에서는 해당 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 송한 날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 다만,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휴업 또는 등 록이 취소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제3 호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결권이 없다.</p>	<p>제41조(의결방법)</p> <p>①좌동</p> <p>② 제1항에 의한 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하며, 대리출석을 위임하고자 하는 회 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다른 위임장 을 이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좌동</p> <p>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 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회장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회규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 다.</p> <p>⑥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정기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12 월 31일 현재의 회원으로 하고, 임시총 회의 경우 해당 총회의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날 현재의 회원으로 한다. 다 만,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휴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와 법 제17조제2항제 3호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 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는 의결권이 없다.</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자구수정</p> <p>자구 명확화</p>
<p>제42조(이해상반)</p> <p>이 회와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당 해회원은 총회의 의결 시 참석하지 못 한다.</p>	<p>제42조(이해상반)</p> <p>이 회와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회원은 총회의 의결 시 참석하지 못한다.</p>	<p>자구수정</p>
<p>제45조의2(대의원회의 소집)</p> <p>①~③생략</p> <p>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대의원회 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에 회 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대의원</p>	<p>제45조의2(대의원회의 소집)</p> <p>①~③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 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3일 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p>	<p>자구수정</p>

<p>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등을 대의원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회 구성원 전원이 출석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제4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 출석과 위임에 <u>의한</u> 대리출석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u>출석대의원의(대리출석자 제외)</u>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②생략</p>	<p>제47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 1/3 이상 출석과 위임에 <u>다른</u> 대리출석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u>출석대의원(대리출석자 제외)의</u>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②좌동</p>	<p>자구수정</p>
<p>제51조의2(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공헌이 <u>다대한</u> 역대회장 중 1인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제51조의2(명예회장) ① 명예회장은 이 회의 발전에 공헌이 <u>많은</u> 역대회장 중 1인을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추대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자구수정</p>
<p>제55조(윤리위원회) ①생략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u>의거</u>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상임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생략</p>	<p>제55조(윤리위원회) ①좌동 ②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u>따라</u>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위원장 및 상임이사회 추천에 의해 회장이 위촉한다. ③좌동</p>	<p>자구수정</p>
<p>제56조(조사권한) ①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u>때</u> 회장은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u>의거</u> 회장의 조사지시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이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및 의견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u>때</u>에는 동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56조(조사권한) ① 회원이 법령, 회령 또는 회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u>경우</u> 회장은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u>따라</u> 회장의 조사지시가 있을 때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즉시 이를 조사하고 조사결과 및 의견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u>경우에는</u> 동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조사하게 하거나 당사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진술 또는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p>
<p>제57조의 2(지식재산정책연구소) ① 지식재산권제도의 <u>연구를</u> 위하여 지식재산정책연구소를 둔다.</p>	<p>제57조의 2(지식재산정책연구소) ① 지식재산권제도의 <u>정책연구 등을</u> 위하여 지식재산정책연구소를 둔다.</p>	<p>자구수정</p>

② 생략	② 생략	
제58조(사무총장)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의거 회장이 임명한다. ③~⑤ 생략	제58조(사무총장) ①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상임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③~⑤ 생략	자구수정
제6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회의 회무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의거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생략	제6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 회의 회무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운영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③생략	자구수정
제66조(재원) 이 회의 재원은 제18조에 의거한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66조(재원) 이 회의 재원은 제18조에 따른 회비, 수수료, 특별회비(기부금), 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71조의2(변리사의 연수) ① 이 회의는 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실무수습 및 법 제15조에 의한 변리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71조의2(변리사의 연수) ① 이 회의는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법 제15조에 따른 변리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자구수정
제75조(표장 및 휘장) ① 이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별지 제7호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다. ② 회원이 패용하는 휘장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제75조(표장 및 휘장) ① 이 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으로 별지 제7호와 같은 표장을 사용한다. ② 회원이 사용하는 휘장은 별지 제8호와 같다.	자구수정
	부 칙(2023. 2.)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

(2013년 2월 28일 개정, 2014. 2. 21. 개정, 2015. 2. 26 개정, 2023. 2. 개정)

성 명	한글 :	변리사등록번호		
	한문 :	자 격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시 험 (변리사시험 제 회) <input type="checkbox"/> 변호사(시험 제 회) <input type="checkbox"/> 특허청 경력자	
	영문 :	자격등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자 택)		전 화	자 택	
		화	휴대폰	
사무소 명 칭	한글 :	전 화		
	한문 :	팩 스		
	영문 :	이메일		
사무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최종출신학교 및 전공				
전문분야 신 고 (택1)	1. 전기, 전자, 통신 등 2. 기계, 금속, 건설 등 3. 화학, 약학, 생명 등 4.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 이 전문분야 신고사항 은 추후 감정사건운영규정 에 따라 분류 적용되며, 전문변리사분회에 소속됨		
위 사람은 변리사법 제11조 및 회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변리사			(인)	
대한변리사회장 귀하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특허청용, 법원행정처용) 각1부.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4. 반명함판 사진 1매. 5. 소속사무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별지 제1호의2 서식]

특 허 법 인 회 원 가 입 신 청 서

(2014. 2. 21. 개정, 2015. 2. 26 개정, 2023. 2. 개정)

법 인 명	한 글 :	법인인가번호	
	한 문 :	법인인가연월일	
	영 문 :	<u>사업자등록번호</u>	
사무소 주소		전 화	
		F A X	
Homepage		E - mail	
〈법인 구성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자격구분
			전문분야
			날 인
			(인)
			(인)
			(인)
			(인)
			(인)
<p>위 법인은 변리사법 제11조 및 회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 법인 (인)</p> <p>대한변리사회장 귀하</p>			
<p>제출서류 1. 특허법인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특허청용, 법원행정처용)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별지 제1호의3 서식]

특 허 법 인(유 한) 회 원 가 입 신 청 서

([] 특허법인(유한) [] 조직 변경)

(2014. 2. 21. 신설, 2015. 2. 26 개정, 2019. 2. 22. 개정, 2023. 2. 개정)

법 인 명	한 글 :	법인인가번호	
	한 문 :	법인인가연월일	
	영 문 :	<u>사업자등록번호</u>	
사무소 주 소		전 화	
		F A X	
Homepage		E - mail	
〈법인 구성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 번호	등록 일자
			이사여부
			자격 구분
			전문분야
			날 인
			(인)
			(인)
			(인)
			(인)
			(인)
<p>위 법인은 변리사법 제11조 및 회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 법인 (인)</p> <p>대한변리사회장 귀하</p>			
<p>제출서류 1. 특허법인(유한) 설립인가서 사본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특허청용, 법원행정처용) 각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별지 제1호의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정 2014. 2. 21, 개정 2016. 2. 19, 개정 2020. 2. 21, 개정 2023. 2.)

대한변리사회가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허청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 아 래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이름(한글, 한문, 영문), 주민등록번호, 변리사등록번호 및 등록일, 자격, 주소(주택, 사무소), 전화(주택, 사무소, 휴대폰), 사무소명칭, 출신학교, 전공, 전문분야, **사업자등록번호**
- 선택항목 : 이메일, 주요경력, 주요포상, 외국어능력, 주요자격취득
- 수집방법 : 홈페이지 또는 회원가입신청서 및 이력서, 변리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원관리
 - 회원서비스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본인확인
 - 불공정행위에 따른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 공지사항 전달 및 대국민 서비스(공익변리)수입 관리
 - 변리사 통계작성
- 회원 서비스제공
 - 간행물(**회지**, 지식과권리, 법령집, 회원수첩, 다이어리, 캘린더, 기타도서 등) 발송
 - 외부 강사 및 위원 추천
 - 공동구매 제공
 -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록**
 - 기타 회원요청에 **따른** 서비스 제공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변리사 자격 유지 시 까지
(단, 소관업무 수행 등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그에 따른 불이익

- 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 거부 시 회원가입 및 회원서비스 유지를 하실 수 없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수탁받는 자(또는 업체)

- 간행물(회원수첩, 다이어리) 발간 업체
 - 홈페이지(www.kpaa.or.kr) 참조
- 간행물 발송 위탁 업체
 - 홈페이지(www.kpaa.or.kr) 참조
-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 홈페이지(www.kpaa.or.kr) 참조
-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 홈페이지(www.hrdb.go.kr) 참조
- 본회는 회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기의 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해당 내용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단, 간행물 발송, 이벤트 당첨에 **따른** 상품발송, 공동구매 상품배송 등 물품의 배송을 위하여 운송업체에 최소한의 이용자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위탁 업무 내용

- 간행물 발간을 위한 데이터 편집 업무
- 간행물 발송을 위한 위탁 업무
- 홈페이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공공기관의 각종 심사·조정·자문위원 등 공직후보자 추천 시 활용

위탁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한글,한문), 생년월일, 성별, 사무소명(한글,영문), 주소, 이메일, 등록번호, 전문분야, 출신학교, 전공, 주요경력, 주요포상, 전화번호, 팩스번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된 개인정보는 위탁된 날로부터 변리사 자격 유지 시 또는 이용 목적 달성 때까지 보유 및 이용 됩니다.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3.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본회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회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기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변경에 관한 사항

본회는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또는 업체), 이용목적(제공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한 변경이 있을 시 본회 홈페이지 또는 회지를 통해 변경 내용을 게재 합니다.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이용·제공 제한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0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한변리사회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개정 2023. 2. .)

본인은 년 월 일() 시 분부터 에서 개최
되는 대한변리사회 제 회 정기총회(~~및 제 회 공제조합 정기총회~~)에 있어서,
회칙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행사를 대한변리사회 회장에게 위임합니
다. (위임장 제출시 참조 : 위임장은 성립정족수로만 반영되고, 안건표결시는 반영
안됨)

년 월 일

위 위임인 변리사 (인)

대 한 변 리 사 회 회 장 귀 하

(FAX. 02-3486-3511)

회칙 개정(안)

(제28조, 제29조)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28조(징계의 의결)</p> <p>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상 회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④ 생략</p> <p>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⑥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그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회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⑦생략</p>	<p>제28조(징계의 의결)</p> <p>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회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④ 생략</p> <p>⑤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할 때에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p> <p>⑥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그 이유를 명기하여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제2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징계결정에 대해서는 회지 및 이 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⑦좌동</p>	<p>자구수정</p> <p>띄어쓰기</p> <p>주의에 대해서는 회지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음</p>
<p>제29조(징계처분의 종류)</p> <p>징계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고</p> <p>2.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p> <p>3. 제명</p>	<p>제29조(징계처분의 종류)</p> <p>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의</p> <p>2. 경고</p> <p>3. 3년 이하의 피선거권 제한</p> <p>4. 제명</p>	<p>징계처분 종류 세분화</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3. 2.)</p> <p>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회칙 개정(안)

(제8조, 제14조)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p> <p>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p> <p>1. 휴업중인 때</p> <p>2.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p> <p>3. <삭제></p> <p>② 제1항 중 휴업중인 자는 재개업 신고를 함으로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회원자격이 회복된다.</p> <p>③ <u>휴업 전 제18조에서 규정한 회비의 체납분이 있는 경우에는 재개업 신고와 함께 회비의 체납분을 납입하여야 한다.</u></p>	<p>제8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p> <p>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자격이 정지된다.</p> <p>1. 휴업중인 때</p> <p>2.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부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p> <p>3. <삭제></p> <p>② 제1항 중 휴업중인 자는 재개업 신고를 함으로써,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기간이 종료함으로써 회원자격이 회복된다.</p> <p>③ <u>휴업신고 전 제18조에서 규정한 회비의 체납분을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u></p>	<p>붙여쓰기</p> <p>휴업시 미납회비 납부의무 강화</p>
<p>제14조(회원의 권리)</p> <p>①개인 회원은 법과 회칙 및 회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p> <p>②제1항의 권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p> <p>③제8조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p> <p>④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권리와 회무담임권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p> <p>1. 제17조의3에 따른 연수실적이 직전 연수주기 동안 10시간 미만인 경우</p> <p>2. 제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회비를 12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p>	<p>제14조(회원의 권리)</p> <p>①~③좌동</p> <p>④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권리와 회무담임권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p> <p>1.~2. 좌동</p>	<p>자구수정</p>

<p>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피선거권이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선거일 현재 등록취소 후 다시 가입한 회원의 경우 다시 가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 현재 휴업신고 후 재개업 신고한 회원의 경우 당해 개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현재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u>업무정지 처분</u>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p>(신설)</p> <p>⑥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권리제한 기간, 회무의 범위 등은 회규로 정한다.</p> <p>⑦제4항에 따른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9조의2, 제9조의3를 준용한다.</p> <p>(신설)</p>	<p>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피선거권이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2. 좌동 3. 선거일 현재 법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라 <u>업무정지처분</u>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4. <u>이 회 회칙 제29조 제4호에 따른 제명 처분</u>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p>⑥~⑦좌동</p> <p>⑧<u>회장, 감사 등 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의 제한은 오직 회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u></p>	<p>붙여쓰기</p> <p>피선거권 제한 명확화</p> <p>선출직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회칙으로만 정함</p>
	<p>부 칙(2023. 2.)</p> <p>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경과규정) 제8조 제3항 개정 전 동 항에 따라 휴업한 회원이 제18조에서 규정된 회비의 체납분이 있는 경우 개정 전 제8조 제3항에 따라 재개업 신고와 함께 회비의 체납분을 납부하여야 한다.</p>	

회칙 개정(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33조의 2(선임)</p> <p>①회장은 <u>총회에서</u>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p> <p>②회장 입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p> <p>③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에 대하여, 1인인 때에는 동인과 차위 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시 후보자 1인이 사퇴하여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한다.</p> <p>④~⑤생략</p> <p>⑥총회는 감사의 선임을 전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⑦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 2(선임)</p> <p>①회장은 <u>사전투표 및 총회에서 실시한</u> 회원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p> <p>②좌동</p> <p>③회장으로 입후보한 자가 수인인 때에는 <u>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수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u></p> <p>④~⑦좌동</p>	<p>사전투표 도입</p> <p>결선투표 삭제</p>
<p>(신설)</p>	<p>제33조의3(사전투표)</p> <p>①이 회는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회원을 위하여 <u>사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사전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사전투표제도 도입</p>
<p>(신설)</p>	<p>제33조의4(투표인 명부)</p> <p>①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일 전까지 선거권이 있는 투표인을 확정하여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②투표인 명부 작성은 제41조 제6항을</p>	<p>투표인 명부 작성 근거 마련</p>

	<p>준용한다.</p> <p>③투표일 현재 등록이 취소된 자, 휴업, 업무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중에 있는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p>	
(신설)	<p>제33조의5(선거관리위원회)</p> <p>①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선관위 설치 근거 마련</p>
	<p>부 칙(2023. 2.)</p> <p>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회칙 개정(안)

(제33조의2 제6항, 제33조의6)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33조의 2(선임)</p> <p>①~⑤생략</p> <p>⑥총회는 감사의 선임을 전임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⑦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33조의 2(선임)</p> <p>①~⑤좌동</p> <p>⑥총회는 감사의 선임을 감사선출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p> <p>⑦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감사 선임 위임 근거 마련</p>
<p>(신설)</p>	<p>제33조의6(감사선출위원회)</p> <p>①제33조의2 제6항에 따라 총회가 감사의 선임을 감사선출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감사 선임을 위하여 감사선출위원회를 둔다.</p> <p>②감사선출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p> <p>1. 전임회장(회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전전임 회장)</p> <p>2. 윤리위원회 위원장</p> <p>3. 징계위원회 위원장</p> <p>4. 감사 2인</p> <p>③감사선출위원회는 감사 2인 중 1인은 이 회 임원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p> <p>④감사선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p>	<p>감사선출위 설치 근거 마련</p> <p>감사선출위 구성</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3. 2.)</p> <p>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회칙 개정(안)

(제17조의6)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신설)	<p>제17조의6(광고)</p> <p>① <u>이 회 회원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 경력 · 주요취급업무 · 업무실적 기타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 · 잡지 · 방송 · 컴퓨터 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u></p> <p>② <u>광고에 관한 사항은 회규로 정한다.</u></p>	<p>광고 근거 마련</p>
	<p>부 칙(2023. 2.)</p> <p>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특허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p>	

<p>16. <삭제> 17. 재외자 소송 13,500원 18. <삭제> 19. 내국인 상고 9,000원 20. 재외자 상고 13,500원 21. <삭제> ④<삭제> ⑤<삭제> (신설) (신설)</p>	<p>⑤좌동 ⑥좌동 ⑦생략 ⑧이 회가 요구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제1항 단서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p>	<p>조문순서 변경 조문순서 변경 (제11호 안건 참조) 입회비 차등부과에 따른 구제절차 마련</p>
<p>제3조의2(회비의 감액) ①<삭제> ②<삭제> ③이 회 회장의 재임 기간이나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기간에는 월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④이 회에 상근하고 있는 회원은 그 근무 기간에는 월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⑤회비부과 후 휴폐업 등 <u>자격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달의 전월까지 회비를 부과한다.</u> ⑥무료로 수입한 사건에 대하여 실적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무료로 수입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말한다. 1. 이 회의 규정에 의거 무료로 수입한 사건 2. 이 회의 상임이사회 의결로 지정된 공익단체의 사건 ⑦제6항 제2호에 대한 실적회비 면제신청시, 해당사건을 수입한 변리사 명단, 수행건수 및 재직기간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회비의 감액) ①~④좌동 ⑤회비부과 후 휴폐업 등 <u>자격변동이 있을 때에는 자격변동이 발생한 당월까지 회비를 부과한다.</u> ⑥~⑦좌동</p>	<p>휴폐업, 재개업자 등 회비 납부의무 강화(개업과 휴업을 반복하는 회원증가에 따른 조치)</p>
	<p>부 칙(2023.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제3조 제1항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 제3항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p>	

회비 규정 개정(안)

(제3조 제7항)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3조(회비의 금액)</p> <p>①생략</p> <p>②월회비는 월 40,000원으로 한다.</p> <p>③실적회비는 매 건 다음과 같이 하고, 납입된 실적회비 중 100분의 15는 회관특별회계로 계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내국인 특허출원 1,500원 2. 내국인 실용신안출원 1,300원 3. 내국인 디자인출원 1,000원 4. 내국인 상표출원 900원 5. 재외자 특허출원 3,100원 6. 재외자 실용신안출원 2,700원 7. 재외자 디자인출원 1,800원 8. 재외자 상표출원 1,300원 9. 내국인 당사자계 심판 및 재심, 심판참가 4,500원 10. 재외자 당사자계 심판 및 재심, 심판참가 7,200원 11. 내국인 결정계 심판 1,300원 12. 재외자 결정계 심판 1,800원 13. 내국인 이의신청 1,300원 14. 재외자 이의신청 1,800원 15. 내국인 소송 9,000원 16. <삭제> 17. 재외자 소송 13,500원 18. <삭제> 19. 내국인 상고 9,000원 20. 재외자 상고 13,500원 21. <삭제> <p>④<삭제></p>	<p>제3조(회비의 금액)</p> <p>①생략</p> <p>②회관 신축에 따른 대출금 상환시 까지 입회비 중 1,000,000원과 이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는 회관특별회계로 계상한다.</p> <p>③좌동</p> <p>④좌동</p> <p>⑤좌동</p>	<p>조문순서 변경</p> <p>조문순서 변경</p> <p>조문순서 변경</p>

<p>⑤<삭제> (신설)</p>	<p>⑥좌동 ⑦제4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 내국인의 상표출원 건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적회비를 증액하고, 납입된 실적회비 중 100분의 15는 회관특별회계로 계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000건을 초과한 건수부터 3,000건까지는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4배 2. 3,000건을 초과한 건수부터 5,000건까지는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6배 3. 5,000건을 초과한 건수부터는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금액의 8배 	<p>조문순서 변경 내국인 상표출원에 대해 실적회비 증액</p>
	<p>부 칙(2023.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제3조 제7항 중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부과되어 제4조의2 제2항에 의거 정산되는 실적회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5조(공익활동시간)</p> <p>①~② 생략</p> <p>③ <u>정당한 이유 없이 공익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미수행한 공익활동 시간은 다음 주기 의무 발생시간에 가산된다.</u></p>	<p>제5조(공익활동시간)</p> <p>①~② 좌동</p> <p><삭제></p>	<p>공익활동 미수행 시간의 다음 주기 가산 규정 삭제</p>
<p>제8조(공익활동의 보고 및 심사 등)</p> <p>① 공익활동을 한 개인회원은 <u>매 연초부터 연말까지</u> 행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다음해 2월 말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8조(공익활동의 보고 및 심사 등)</p> <p>① 공익활동을 한 개인회원은 <u>해당 주기 내에</u> 행한 공익활동 내용과 시간 등을 <u>해당 주기가 종료된</u> 다음 해 2월 말까지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보고 기한 명시</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3. 2.)</p> <p>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 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회지 규정 개정(안)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2조(제호) ① 회지의 제호는 「<u>특허와상표</u>」로 한다. ② <생략></p>	<p>제2조(제호) ① 회지의 제호는 「<u>지식재산뉴스</u>」로 한다. ② <좌동></p>	제호 변경																
<p>제9조(원고료) <별표1> <원고료 지급액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특허와상표</th> </tr> <tr> <th>구 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200자 원고지 7매 이하</td> <td>기본 10만원</td> </tr> <tr> <td>200자 원고지 7매 초과부터</td> <td>1만원/200자 원고지 1매</td> </tr> </tbody> </table> <p>※ 원고료는 최대 8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단, 홍보 및 회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료 지급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p>	특허와상표		구 분	금 액	200자 원고지 7매 이하	기본 10만원	200자 원고지 7매 초과부터	1만원/200자 원고지 1매	<p>제9조(원고료) <별표1> <원고료 지급액표></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지식재산뉴스</th> </tr> <tr> <th>구 분</th> <th>금 액</th> </tr> </thead> <tbody> <tr> <td>200자 원고지 7매 이하</td> <td>기본 10만원</td> </tr> <tr> <td>200자 원고지 7매 초과부터</td> <td>1만원/200자 원고지 1매</td> </tr> </tbody> </table> <p>※ 원고료는 최대 80만원을 넘을 수 없음 ※ 단, 홍보 및 회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료 지급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p>	지식재산뉴스		구 분	금 액	200자 원고지 7매 이하	기본 10만원	200자 원고지 7매 초과부터	1만원/200자 원고지 1매	제호 변경
특허와상표																		
구 분	금 액																	
200자 원고지 7매 이하	기본 10만원																	
200자 원고지 7매 초과부터	1만원/200자 원고지 1매																	
지식재산뉴스																		
구 분	금 액																	
200자 원고지 7매 이하	기본 10만원																	
200자 원고지 7매 초과부터	1만원/200자 원고지 1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2023. 2. .)</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 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제2항, 제16조제3항 중 ‘특허와상표’ 를 ‘회지’ 로 한다. ② 「정계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제20조제1항 중 ‘특허와상표’ 를 ‘회지’ 로 한다. ③ 「변리사 친목모임 등에 대한 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특허와상표’ 를 ‘회지’ 로 한다. ④ 「대한변리사회 공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p>	제호 변경																

	<p>3조, 제4조 중 ‘특허와상표’를 ‘회지’로 한다.</p> <p>⑤ 「직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5조 중 ‘특허와상표’를 ‘회지’로 한다.</p> <p>⑥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의 별표 중 ‘특허와상표’를 ‘회지’로 한다.</p> <p>제3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회칙 제9조의4가 특허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	---	--

포상 규정 개정(안)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2조(포상의 종류) ①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개업상 2. 공로상 3. <삭제> 4. 기타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포상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p>	<p>제2조(포상의 종류) ①좌동 ②제1항의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며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장기개업상은 부상 수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포상에 대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p>	<p>장기개업상 부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p>
	<p>부 칙(2023. 2.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대의원회의 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p>	